

October 18, 2018

Legal Update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1):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법 공포

규제자유특구 내에서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시험·검증의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2019. 4.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그곳에서 가능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외 입법례에서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참조하여 개정된 3가지 법률(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중 하나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현실에 맞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시험규제에 대해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를 인정받거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특구에서의 규제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암호자산(Crypto Asset), 공유차량서비스 등 스타트업들 및 여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지역적, 일시적 규제 완화가 본법으로 인해 시도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규제자유특구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 수립 및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 지정

- 비수도권 시 · 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 위치 · 면적, 혁신사업 · 전략사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혁신사업 · 전략사업에 참여하여 규제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및 규제특례의 적용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간기업등은 비수도권 시 · 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수도권 시 · 도지사는 그 제안을 수용하여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법 제72조, 제73조).
- 비수도권 시 · 도지사로부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합니다(규제자유특구법 제75조).
- 비수도권 시 · 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기존에 선정되었던 지역전략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지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지역별 지역전략산업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1]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규제자유특구법 부칙 제3조).

규제자유특구에서의 규제특례

-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경우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법 제80조). 규제자유특구에서 인정되는 규제특례는 규제의 신속확인, 시험 · 검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 규제의 신속확인(규제자유특구법 제85조):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 전략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혁신사업 · 전략산업 관련 인허가 필요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규제자유특구법 제86조 내지 제88조):

규제자유특구 내에서의 혁신사업·전략산업에 관하여, (i) 인허가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는 경우, (ii) 인허가 근거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및 (iii)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혁신사업·전략산업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법 제86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례 부여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이나,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만료 2개월 전 신청을 받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받은 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특례 사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례 활용 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관할 시·도지사 및 별도 협의를 통해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임시허가(규제자유특구법 제90조):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전략산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전략산업에 관하여 (i) 인허가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는 경우 및 (ii) 인허가 근거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이나,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만료 2개월 전 신청을 받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를 받은 자와 동일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합니다.

· 개별 법령상 규제 완화:

규제자유특구법은 규제자유특구 내에서의 혁신사업 · 전략산업에 관하여 각종 개별 법령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과 관련하여 완화되는 주요 규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 연구 목적 운행시 임시운행 허가(규제자유특구법 제114조),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 수집한 비식별화된 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규제자유특구법 제115조)
-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이용 동의에 대한 규제 완화(규제자유특구법 제118조)
-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불요(규제자유특구법 제119조)
- 의약품 제조업자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우선 심사(규제자유특구법 제120조)
-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제조허가 · 인증 신청 및 신고에 대한 우선 심사(규제자유특구법 제121조)
- 공역 외의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구역 지정(규제자유특구법 제123조)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규제자유특구법의 주요 내용 및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각 지역별 지역전략산업

지역	지역전략산업
대 구	① 자율주행 자동차 ② IoT 기반 웰니스산업
대 전	① 첨단센서 ② 유전자의학
전 북	① 탄소산업 ② 농생명
경 북	① 스마트기기 ② 타이타늄
광 주	①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②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충 북	① 바이오의학 ② 화장품
부 산	① 해양관광 ②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경 남	① 지능형기계 ②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강 원	① 스마트 헬스케어 ② 관광
충 남	① 태양광 ②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전 남	①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포함) ② 드론(무인기)
제 주	① 스마트관광 ② 전기차인프라
세 종	① 에너지 IoT
울 산	①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 ② 3D 프린팅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조정희
파트너변호사

☎ 02-316-1624
✉ jhcho@shinkim.com



김병인
변호사

☎ 02-316-1572
✉ bikim@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 판교 · 베이징 · 상해 · 호치민 · 하노이
